

정 관

학교법인 휘문의숙

(개정 2026. 04. 28.)

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

개정 2026년 04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은 학교법인 휘문의숙(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휘문중학교
2. 휘문고등학교

제4조(주소)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55(대치동)에 둔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5조(자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

금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8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다음해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1조(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②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의 수는 3인으로 하며, 제1항 제1호의 이사 수에 포함한다.

제13조(상근임원) 법인의 유지와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이사장을 포함한다.) 1인을 상근이사로 둘 수 있으며, 상근이사의 분장 업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방이사의 자격 및 선임) ①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추천이 없을 때에는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개방이사의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 선임 절차의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7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휘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휘문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제19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不備)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입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원격화상회의 방식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및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8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 특례)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수익사업

제30조(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관리업
2. 영리법인의 주식 투자

제5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31조(임용) ①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교의 장이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사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기간제 교원 및 부장교사는 학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학교장 이외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32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자에 한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⑪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2조(정년) ① 법인의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년퇴직은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33조(기간제 교원)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이하 "기간제 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기간제 교원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징계재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특별승진)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5조(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 및 명예퇴직한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은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나, 1,2차 공개채용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1조 제5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37조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각급학교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38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원하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4호까지 및 1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구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9.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39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8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38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한다.
3. 제38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8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제38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8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8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8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제38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40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1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② 제3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38조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하게 어려운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봉급은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을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3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5조(명예퇴직 수당) ① 교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③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수당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수당 지급공고 : 임용권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수당지급 신청기간, 수당 지급방법, 수당 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 지급 신청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한다.

2. 지급심사 결정 : 임용권자는 수당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3. 지급대상자 통지 :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학교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당지급 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 수당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급수에 따라 5~9명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연령별 대표성, 성별 구성 비율, 교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의 2/3 이상을 교원 전체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직 교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결과 공개)

- ① 위원장은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전자 등록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 ③ 위원장은 학교장 결재가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전체 교원이 알 수 있도록 회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단, 특정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공개 결정 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한다.

제52조(교원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3조(운영세칙)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 ①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상설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다.

제3절 사무직원

제55조(자격)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②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관리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56조(임용) ①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57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제70조의6, 제70조의7을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무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6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62조(법인 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한다.

② 법인 사무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고등학교

제63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2인을 둘 수 있다.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하부조직)

① 고등학교의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장이 부서를 정하고 부장은 부장교사로 보한다.

② 고등학교의 행정과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행정실을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분장은 교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장의 임용은 교장에게 위임하고 임용결과를 법인에 보고한다.

제3절 중학교

제65조(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하부조직) ① 중학교의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장이 부서를 정하고 부장은 부장교사로 보한다.

② 중학교의 행정과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행정실을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분장은 교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부장의 임용은 교장에게 위임하고 임용결과를 법인에 보고한다.

제4절 정 원

제67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6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9조(위원의 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선출하여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1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위촉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중인 자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2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3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위촉과정에서 신상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74조(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8. 학교급식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75조(시행의무 등)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74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78조(행동강령) 학교법인 임직원, 학교장과 교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행동강령」을 따른다.

제79조(정관의 개정) 법인의 정관의 개정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0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1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83조(공고)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8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5조(설립당초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민형식	1875.01.06	1923.03.06 ~ 1927.03.05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8
이 사	임경재	1876.11.06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50
"	민광식	1873.12.03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67
"	장응진	1880.03.05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27
"	박승빈		"	
"	김기인	1882.11.19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168
"	민규식	1888.09.30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45-6
"	민대식	1882.07.09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8
"	김한규		"	

부 칙

부 칙 (1923년 3월 6일 학제 107호)
이 정관은 19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51년 8월 31일 문고 제799호)
이 정관은 195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57년 6월 24일 문고 제4482호)
이 정관은 1957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0년 8월 11일 문보 제2364호)
이 정관은 196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2년 4월 21일 문관 제347호)
이 정관은 196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년 1월 24일 문보행 1040.3호)
이 정관은 196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년 11월 11일 문보행 4042.3호)
이 정관은 196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9년 2월 11일 교행 1042.3호)
이 정관은 196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년 8월 9일 관리 1042.2-6020. 제37호)
이 정관은 197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년 10월 29일 관리 1040-6315 제71호)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년 7월 16일 관리 1042.3-416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제31조의2 신설 당시 재직 중인 학교의 장은 정관 변동 동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6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결격사유 해당자)

④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⑤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8년 3월 28일 관리 1042.3-1307)

이 정관은 197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년 10월 14일 관리 1042-6431)

- ①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과 유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법인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⑤ (일반직원의 직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 임명된 자는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직급에 불구하고 퇴직할 때까지 그 직급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⑥ (교원 정년 대한 경과조치) 1학년 1학기 말로 정년퇴직 해당 교원은 1981년 12월 말일까지 이를 유예하되 동일자로 당연 퇴직된다.

부 칙 (1983년 11월 5일 관리 1042.3-1701)

이 정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년 1월 5일 관리 1042.3-155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재적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년 5월 22일 관리 25422-4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고등학교 주사(6급)1명, 기능직 10등급 (종전의 고용원)2명과 중학교의 부서기(9급)1명은 퇴직, 전보, 승진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자연 감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변경된 정원에 불구하고 현재 재직 중인 고용원이 기능직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기능직 정원을 고용원 정원으로 본다.

부 칙 (1992년 1월 14일 행정 25422-59)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를 정하는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년 5월 27일 행정 81422-655)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년 3월 19일 행정 81423-38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년 10월 23일 행정 81422-1546)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주임교사는 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고등학교 서무과장은 행정실장에, 중학교 서무과장은 서무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년 5월 22일 행정 81422-669)

이 정관은 199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년 3월 11일 행정 81422-13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 중 생년월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 해당 호에 규정된 일자에 당연 퇴직한다.

1. 1934년 2월 29일 이전인 자 : 1999년 2월 28일
2. 1934년 3월 1일부터 1937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 1999년 8월 31일

제3조 (명예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 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일에 퇴직하거나 그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34조의2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 중 생년월일이 1937년 9월 1일부터 1942년 8월 31일까지인 자가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 3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부 칙 (1999년 12월 16일, 행정 81422-3433)

이 정관은 199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7조 제1항의 변경사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년 6월 15일, 행정 81422-1307)

이 정관은 200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년 7월 18일, 행정 81422-165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③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

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01년 4월 27일, 행정 81422-84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초과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 14조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②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제 15조 제 5항 및 제 16조 제 4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협의체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꺾워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원 선임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 38조 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77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한다.

부 칙 (2013.09.01.)

이 정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01.)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9.01.)

이 정관은 201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임기중인 사립고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1. 20.)

① 본 정관은 201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감 임기) 개정일을 기준(2015.1.20.)으로 현재 임기 중인 교감부터 고등학교 제73조 3항, 중학교 제75조 3항에 적용한다.

* 현재 임기 중인 교감은 정관 개정일부터 임기 일자를 적용받는다.

부 칙 (2015. 11.10.)

본 정관은 서울시교육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한 사항은 법령이 유효한 개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08. 16.)

본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08.)

본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7.)

본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6. 18.)

본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1. 31.)

본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학교지원과-1566(2020.01.31.)

부 칙 (2020. 04. 28.)
본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학교지원과-6212(2020.04.28.)

부 칙 (2021. 04. 28.)
본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학교지원과-6104(2021.4.28.)

부 칙 (2021. 08. 18.)
본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학교지원과-13229(2021.9.23.)

부 칙 (2022. 04. 15.)
본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학교지원과-7954(2022.5.26.)

부 칙 (2022. 07. 13.)
본 정관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4. 20.)
본 정관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5. 25.)
본 정관은 202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23.)
본 정관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1. 3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교감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 02. 14.)

이 정관은 202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5. 15.)

이 정관은 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9. 26.)

이 정관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4. 28.)

이 정관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일반직계	5명
4급(서기관)	1명
6급(주 사)	1명
7급(주사보)	1명
8급(서 기)	1명
9급(서기보)	1명
총 계	5명

[별표 2]

중학교 사무직원 정원

일반직	교육행정	시설관리
6급	1명	-
8급	1명	1명
9급	2명	1명
계	4명	2명

고등학교 사무직원 정원

일반직	교육행정	시설관리
5급	1명	-
6급	1명	-
7급	2명	1명
8급	1명	-
9급	2명	2명
계	7명	3명

[별표 3]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기준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퇴직당시(법인 정관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10년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정관 제32조(정년), 인사규정 제36조(정년), 부칙(경과조치)」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 3) 표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를 적용한다.